

	규정		문서번호	TWA-A141
			제정일자	2008. 02. 0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9. 08. 30.
			개정번호	3

목 차

부 칙

작성부서	사무처	제정일자	2008. 02.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사무처장	기획예산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A-A141
			제정일자	2008. 02. 0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9. 08. 30.
			개정번호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학원 정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정관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자격과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조교수 이상) : 전임교원 중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천.<개정 2018.02.19., 2019.08.30.>
2. 직원 4명(계약직, 조교 포함) : 정규직원 중 전체직원회의에서 추천.<개정 2018.02.19., 2019.08.30>
3. 학생 1명 :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에서 추천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③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인을 둔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2.19.>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의장은 간사1인을 직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2.19.>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해 추천된 학생 평의원이 학생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입 학생대표가 평의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학생 평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18.02.19.>

③ 보궐 평의원을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2.19.>

제5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문서번호	TWA-A141	
		제정일자	2008. 02. 0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9. 08. 30.	
		개정번호	3	페이지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소집) ① 평의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한다.

- ② 평의원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학생 평의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평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④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2.19.>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02.19.>

제8조(보칙)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최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일로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A-A141	
		제정일자	2008. 02. 0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9. 08. 30.	
		개정번호	3	페이지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